

도서정가제 입법화 사실상 무산돼

공정위 반대로 보류... 출판진흥법 입법화 역시 논란 빛을 뒀

'서련'이 추진한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문광위 소위원회가 공정위의 거센 반발에 밀려 법안 상정을 유보한 것이다. '서련'이 제기한 법률(안) 제정이 유보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명문화한 출판진흥법 제정 역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 이하 '서련')가 추진한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구랍 13일 의견조율에 나섰던 문광위 소속 소위원회가 결국 법안 유보를 결정한 것이다. 박왕규씨(국민회의 신기남 의원 비서관)는 "소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련'의 김윤석 사무국장은 "공정위의 반대로 다음 회기에 의견조율을 다시 하자는 선에서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도서정가제 입법화 유보돼

'서련'은 지난해 7월 법안을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에 제출했다. 이를 국회의원회 길승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11월 22일 발의해 입법화가 추진됐다.

전문 15조(본문 13조, 부칙 2조)로 구성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출판 및 잡지사의 정가표시 의무규정, 실제매장 및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 금지, 발행 후 2년 지난 도서에 대한 정가조정 판매규정, 할인매장으로의 도서유통 및 공급 불가, 정가판매 예외규정 등과 함께 할인판매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출판물의 재판매가격 유지제도'와 달리 정가판매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서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200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도서의 할인판매를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해 도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가유지를 천명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서정가제 입법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배진철 서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생산품의 가격을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도서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예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서점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인 할인판매 행위를 범법으로 몰아붙이는 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출판계는 정가제 입법화에 적극 찬동했다. 출판인회의(회장 김연호)는 정가제의 당위성을 주장한 문건을 문광위 소속 의원 19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안 상정이 보류되자 문화관광부는 다음 회기에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과 박태영 사무관은 "다음 회기를 지켜보고, 만약 '서련' 측의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출판진흥법을 통해 정가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승흠 의원측은 "일반 할인매장의 판매 금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전자상거래 부분을 수정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정가제 입법화를 계속 반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서기관은

"정가제가 2002년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입법화하려는 것은 출판계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사이버 서점의 할인판매 허용 여부였다. 일부 의원들이 무조건 할인판매를 금지할 경우 사이버 서점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출판진흥법 상정도 낙관할 수 없어

정가제 실시대상에서 사이버 서점을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출판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때 사이버 서점을 운영한 부꾸의 조성일 대표는 "사이버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인판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현재 사이버 서점은 대부분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이버 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서점에 나가지 않는 만큼 얻은 시간적·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할인혜택을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 출판사 대표는 "현재 사이버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는 기존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와 다를 것이 없다. 즉, 할인을 무기로 영업하는 것이다. 할인판매가 성행하게 되면 출판사들은 할인 가능한 책만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출판의 질은 떨어지고 이른바 '저품가격'이 조장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출판계는 출판진흥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면서 도서정가제를 명문화했다. '서련'이 제기한 정가제의 입법화가 보류된 만큼 출판진흥법 역시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 오원진 기자